# 성주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07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## 1. 개정이유

○ 「수의사법」(법률 제7546호, 개정 2005. 5. 31,시행 2005.12.1.)제21조의 개정으로 도시자가 수행하던 공수의 위촉 및 지도·감독업무가 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상위 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·개정하여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 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
- 「성주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」를 「성주군 공수의동원 여비지급 조례」로 함.

나. 「수의사법」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"경상북도지사"가 공수의를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"성주군수"가 위촉하도록 함(안 제1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수의사법」 제21조 내지 제22조(발췌 별첨)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타

(1) 개정조례안 : 붙임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(3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# 성주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

**성주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제명 「성주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」를 「성주군 공수의동원 여비지급조례」로 한다.

제1조중 "수의사법"을 "「수의사법」"으로 하고, "경상북도지사"를 "성주군수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(안) | 개정이유 |
|---|---|---|
| 제명 「성주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」 | 제명 「성주군 공수의동원 여비지급 조례」 | 제명 띄어쓰기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------「수의사법」-----성주군수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|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|